

목 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2
2. '9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65
3. 1996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177
4.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96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6
----------	----

제안년월일 : 1996. 9.

발 의 자 : 김종영 의원
외 6인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기간은 1996년 9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제 안 이 유

-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편성의 합법성·적합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심 사 계 획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

- . 심도있는 심사로 건전한재정운영
- . 신속한 의사진행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199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 활동기간

1996년 9월 20일 (1일간)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_____ 7인이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일 시	내 용	비 고
'96. 9. 20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간사 선임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설명 . 검토보고 . 소관별심사(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 계수조정, 심사의결 	

시 간 계 획

제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예결특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6. 9. 20(금) 10:30	1.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가. 개요설명 나. 검토보고 다. 소관별 심사 1) 일반회계 세입 2) " 세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지역개발과, 내무과, 민원봉사실, 재무과, 관광문화과, 보건의료원,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12:00	○ 중 식	
13:00	○ 소관별심사 계속 (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지적과, 농정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상공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읍면 및 출장소) 3)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16:00	○ 종 료	

'96지방채차입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95
----------	----

제출년월일 : 1996.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사유

- 종합민원실 신축, 평창군의회청사 증축 및 평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신축 등에 대하여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부분 또는 전액 확보하였으나,
- 확보된 사업비도 어려운 군재정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아니라, 미 확보된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사업비는 앞으로 전액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를 차입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져 합니다.

2. 주요 골자

사업명	기채규모	기채선	기채종류	발행시기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종합민원실 신축	500,000,000 (5억원)	지방재정 공제회	증서차입	1996년	년 3%	2년거치10 년균등상환	군비
평창군의회 청사 증축	100,000,000 (1억원)	"	"	"	"	"	"
지역농업개 발센터신축	300,000,000 (3억원)	"	"	"	"	"	"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

위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1호 서식 >

事 業 計 劃 書

1. 사 업 명 : 평창군 종합민원실 신축

2.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지방자치에 따른 군청 민원실의 「지방행정종합정보센터」화
- 민원실만 방문하면 모든 민원처리 기능토록 주민편익시설 제공

3. 추진 경 위

- '95. 10. 27 청사정비계획 수립
- '96. 1. 30 종합민원실 신축사업 계획(안) 확정
- '96. 8월 현재 사업추진 전반의 추진준비 완료

4. 사업 개요

- 기 간 : '96. 6월 ~ '96. 12월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 내 역 :
 - 부지면적 : 23,244 m² (확보 23,244m², 미확보 m²)
 - 건물면적 : 1,032 m² (신축 1,032m², 증 축 m²)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 업 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금 회 계 획					금후 계 획
				계	지방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기타	
계		1,135	20	1,115	500		615		
보상비									
공사비	1 식	1,100		1,100	500		600		
부대비	"	35	20	15			15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 계		기 투 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1,135		20		1,115		
보상비								
공사비	1 식	1,100			1식	1,100		
부대비	설계 1식 감리 1식	35		20		.1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계	1,135	20	1,115	
지 방 채	500		500	
국 비				
시 도 비				
시 군 비	635	20	615	
선 수 금				
기 타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
- 민원부서의 근무환경 개선 및 쾌적한 민원실분위기 조성

6. 사업의 타당성 분석

-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검토
- 국토이용계획관리법및 도시계획법상 공공청사부지이므로 저촉사항 없음
-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 여론 : 주민(군민)의 최대 숙원사업 임.
- 각종 인·허가 제한 사항 : 저 촉 사 항 없 음
-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끝.

< 1호 서식 >

事 業 計 劃 書

1. 사 업 명 : 평창군 의회청사 증축

2.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기존건물의 누수 및 협소로 인한 증축공사 필요

3. 추진 경위

- '96. 4. 19 청사 증축계획 수립
- '96. 8월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

4. 사업 개요

- 기 간 : '96. 8월 ~ '96. 12월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 내 역 :
 - 부지면적 : 23,244 m² (확보 23,244m², 미확보 m²)
 - 건물면적 : 521 m² (신축 m², 증 축 521 m²)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 업 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계	지방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기타	
계		748	20	728	100		628		
보상비									
공사비	1 식	700		700	100		600		
부대비	"	48	20	28			28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 계		기 투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748		20		728		
보상비								
공사비	1 식	700			1식	700		
부대비	설계 1식 감리 1식	48		20		2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계	748	20	728	
지방채	100		100	
국비				
시도비				
시군비	648	20	628	
선수금				
기타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누수 및 협소한 건물의 증축공사로 의회청사의 산뜻한 분위기 조성

6. 사업의 타당성 분석

-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검토

- 국토이용계획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 공공청사부지이므로 저촉사항 없음

-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 여론 : 특이한 사항 없음

- 각종 인·허가 제한 사항 : 저촉사항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끝.

< 1호 서식 >

事 業 計 劃 書

1. 사 업 명 : 평창군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2.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추진
- 실증시험을 통한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농업인 상설교육장 화

3. 추진 경위

- '96. 2. 17 평창군 농촌지도소(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계획 수립
- '96. 8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4. 사업 개요

- 기 간 : '96 ~ '98년도 (3년간)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6번지 외 9필지
- 내 역 :
 - 부지면적 : 30,485 m² (확보 30,485m², 미확보 m²)
 - 건물면적 : 2,550 m² (신축 2,550m², 증 축 m²)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 업 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금 회 계 획					금후 계획
				계	지방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기타	
계		1,971		1,971	300		1,671		
보상비									
공사비	1 식	1,886		1,886	300		1,586		
부대비	"	85		85			85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 계		기 투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1,971				1,473		498
보상비								
공사비	1 식	1,886			1식	1,428		458
부대비	설계 1식 감리 1식	85				4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자	금 회 계 획	금 후 계 획
계	1,971		1,473	498
지방채	300		300	
국비				
시도비				
시군비	1,671		1,173	498
선수금				
기타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종합적 농촌지도사업 추진
- 실증시험을 통한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상설교육장화 도모

6. 사업의 타당성 분석

-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검토
- 농지전용 절차는 기 득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저촉사항 없음.

-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 여론 : 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

- 각종 인·허가 제한 사항 : 저촉사항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끝.

강 원 도

우 200-700/춘천시 봉의동 15-1번지/전화(0361)57-9047(행)2323 FAX(0361)50-2425 담당 윤병춘

문서번호 재경 13330 - 83
 시행일자 1996. 8. 23. (3년)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회계. 재무과장

선결	리장	[Handwritten Signature]	지				
접	일자	[Handwritten Date]	시	결	계장	[Stamp]	
수	번호	[Handwritten Number]	재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계	계	장
					[Stamp]	[Handwritten]	[Handwritten]

제목 '96지방청사 추가정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

'96지방청사 추가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채발행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청사를 정비하고 아울러 채무상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지방채발행 승인내역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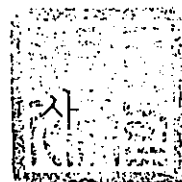
나. 지방채발행 차입내역

- 차입선 : 한국지방개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
- 이자율 : 연리 3%
- 상환기간 :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첨부 : '96지방청사정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내역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더 (01.11.12.16)



'96지방청사정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내역

(단위: 백만원)

정비구분	정비대상 청사	정비 동수	지방채승인액	비고
계		7	2,300	
신축	소계	2	600	
	평창군농촌지도소	1	300	
	정선군농촌지도소	1	300	
증축	소계	5	1,700	
	평창군청	1	500	
	평창군의회	1	100	
	정선군청	1	500	
	인제군청	1	500	
	춘천시신동면	1	100	

1996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審 查 報 告 書

1996年 9月 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6년 9월 12일 (평창군수)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9월 20일
- 다. 상 정 일 자 : 제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6. 9. 20. 상정)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가. 제안이유

- 필수경상비 및 일반경상비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가. 주요골자

1996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요구액은 총 2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00만원임.

· 세입예산중

- 일반회계는 지방세 4억 2,900만원, 세외수입 10억 2,900만원, 보조금 3억 3,600만원, 지방채 9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2,600만원, 사업외수입 6,100만원임.

· 세출예산중

- 일반회계 편성은 인건비 4,400만원, 물건비 1억2,600만원, 이전경비 1억 8,400만원, 자본지출 25억1,8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물건비 8,000만원, 자본지출이 6,400만원, 용자 및 출자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백만원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고선)

가. 일반회계

1) 세 입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 기금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임.

○ 지방세가 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0억 2,900만원으로 6.2%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보건의료원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2억 9,600만원등 총

3억 3,100만원이 증가 하였음.

○ 지방채는 청사정비 기금에서 9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득한것으로

종합민원실 신축에 5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에 3억원, 평창

군의회 청사 보수 및 증축에 1억원 등임.

2) 세 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종합민원실신축, 종합문화

예술회관건립, 평창궁도장 및 평창문화체육관건립, 보건의료원

기능보강,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 등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임.

○ 군민체육대회 및 노성제 행사와 관련한 경비로써, 행사를 위한

신문광고가 2회에 1,320만원, 행사출전 보상비 총 1억 400만원

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음.

-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는 그동안 편입토지에 대한 미보상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것을 해결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보상추정액 8억 2,600만원중 기정예산에 3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평창농협 보상금 부족액 4,6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임.
-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평창문화체육관건립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96년 연부액을 전액 확보하였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계획된 재원의 확보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 평창공도장건립에 군비 1억원, 농산물직거래 유통시설에 군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것은 관련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담비율과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이며, 또한 이미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을 다시 계상하는 행위 등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들임.
- 특히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측 가능한 사안을 수정 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한것은 자치법 운용을 행정편의 위주로 활용한 사례로써 지양되어야 할 사항임.

나. 특별회계

-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중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조례의 개정에 의한 사용료 인상에 따라 증가된 것이고, 기타는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대화상수도 정수장 울타리 설치에 3,000만원, 동절기 누수지점 긴급 수리비로 3,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음.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용자금 회수수입과 통장이자 및 연체수입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용자금의 대부분임.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답 변
<p>[이수현 위원]</p> <p>○ 지적측량 기자재중 광파기는 사용횟수가 많지 않고, 현재 지적과에 보유하고 있는데도 새로 구입 할려는 이유는?</p> <p>○ 평창궁도장(대관정)은 당초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사업</p>	<p>[지역개발과장 송재명]</p> <p>○ 마을안길포장, 각종 소규모사업등이 읍면에서 시행이 되면, 군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측량설계를 위한 합동집무를 하게 되는데, 광파기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대부분 설계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체 측량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임.</p> <p>○ 당초 사업비는 6억원 이었으나, 도비 4억원만 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p>

질 의	답 변
<p>을 시행해야 할 것을 평창군에 보조내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완공후 도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군비 1억원을 추가로 부담 계상한 이유는?</p> <p>[우강호 위원]</p> <p>○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은 연봉서 열상으로 지급될 우려가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계획은 ?</p>	<p>행할 계획이었는데, 부지인 도유지 사용승인 협의과정에서 시설물 완공 후 도에 기부채납하는 수용 계획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반려가 되었고,</p> <p>○ 도에서는 군비 투자 없이는 도유재산을 절대로 사용 할 수 없다고 하여, 협의과정에서 군비를 1억원만 부담하면 시설물을 도에 기부채납한 후 다시 평창군으로 관리전환 하는 것으로 협의하겠다고 하므로,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임.</p> <p>[내무과장 강경석]</p> <p>○ 각 실과소장들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여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자중 직급별, 직능별로 정원의 10% 범위내에서</p>

질 의	답 변
<p>○ 농산물직거래 유통시설의 보조 사업비는 확약서상 매장임대 보증금 만으로 사용하고, 임대계약체결후 발생하는 잔액은 전액 반납조치 하겠다고 한것으로, 보증금 2억5,000만원중 부족한 5,0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1억원을 2회 추경에 이어 또다시 요구한 이유는?</p>	<p>연1회 월봉금액의 50~100%를 지급할 계획임.</p> <p>[농정과장 김시한]</p> <p>○ 당초 도·군비 2억원, 자부담 1억원 등 총 3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설확보의 어려움 등 기타 제반 사항으로 사업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도 4억 3,300만원으로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바,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여 추가보조 하기위한 것으로,</p> <p>○ 기존 보조된 2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적외로 사용이 될시 반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기존 2억원과 자부담 5,000만원은 이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을 하였으며, 추가로 1억원을 확보 할려고 하는 것은 정육대 등 내부시설과 인테리어 시설비로 보조하기 위함.</p>

5. 討論要旨

【 없음 】

6. 審査結果

○ 수정의결(수정내역 불임)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

8. 其他 必要한事項

【 없음 】

첨부 : 1.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내역 1부. 끝.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조서

1. 예산총칙 수정

- . 제1조 ~ 제6조 : 변동사항 없음.
- . 제7조 ~ : 일반회계 예비비를 1,053,386천원으로 한다.

2. 예산 수정의결 내역

가. 총 괄

(단위: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재출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합 계	95,047,173	174,600	174,600	95,047,173	
일반회계	87,604,464	174,600	174,600	87,604,464	
특별회계	7,442,709	0	0	7,442,709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관	항	세항	지방자치단체 재출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감 액	증 액		
계			95,047,173	174,600	174,600	95,047,173	
(본 청)			76,796,138	174,600	174,600	76,796,138	
1000 일반행정			15,718,566	14,600	0	15,703,966	
1200 일반행정비			14,419,501	14,600	0	14,404,901	
	1210 기획관리		5,988,305	14,600	0	5,973,705	
		1215 시정개발	28,649	14,600	0	14,049	○ 측량기자재 구입비(광파기) △14,600

(단위:천원)

장			지방자치단체 재출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업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2000	사회개발		23,706,039	110,000	0	23,596,039	
2100	교육 및 문화		4,599,085	110,000	0	4,489,085	
	2120	체육진흥관리	1,617,085	110,000	0	1,507,085	
		2121 체육 진흥	1,617,085	110,000	0	1,507,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동계대회 추진위원회지 원금 △10,000 ○ 평창강도장 (대관정)건립 △100,000
3000	경제개발		35,387,062	50,000	0	35,337,062	
3100	농수산개발		15,112,520	50,000	0	15,062,520	
	3110	농정관리	11,072,221	50,000	0	11,022,221	
		3115 농산물 유통관리	2,974,973	50,000	0	2,924,973	○ 농산물직거래 유통시설 △50,000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1,733,467	0	174,600	1,908,067	
5400	예비비		878,786	0	174,600	1,053,386	
	5410	예비비	878,786	0	174,600	1,053,386	
		5411 예비비	878,786	0	174,600	1,053,386	○ 일반예비비 증 174,600

1996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수정 예산(안)

의안 번호	90
----------	----

제출년월일 : '96.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요구 하였으나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수정 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예산액의 변동없이 내용의 일부 수정이며,

{ 세 입 }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이전경비 32백만원, 자본지출 △3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칙

1996년도 [4회추경]

* 제1조 :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총 계	95,047,173	2,851,415
일반회계	87,604,464	2,628,133
특별회계	7,442,709	223,281
상수도특별회계	5,310,284	159,308
주택사업특별회계	720,001	21,6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4,314	19,329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80,329	17,40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5,395	1,6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866	1,255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90,520	2,715

-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 제3조 :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 제4조 :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한다.
- * 제5조 :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 제6조 :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78,786천원으로한다.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90
----------	----

제출년월일 : '96.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의결요구액은 총2,78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694백만원, 특별회계는 87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지방세 429백만원, 세외수입 1,029백만원, 보조금 336백만원, 지방채 9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26백만원, 사업외수입 61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44백만원, 물건비 126백만원, 이전경비 184백만원, 자본지출 2,518백만원, 예비비및기타 △17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8백만원, 자본지출 64백만원, 용자및출자 14백만원, 예비비및기타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예 산 총 직

1996 년도 [3회추경]

* 제1조 :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총 계	95,042,673	2,851,280
일반회계	87,599,964	2,627,998
특별회계	7,442,709	223,281
상수도특별회계	5,310,284	159,308
주택사업특별회계	720,001	21,6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4,314	19,329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80,329	17,40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5,395	1,6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866	1,255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90,520	2,715

-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 제3조 :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 제4조 :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00 백만원으로 한다.
- * 제5조 :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 제6조 :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78,786천원으로한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계	95,047,173	92,266,854	2,780,319
일 반 회 계	87,604,464	84,910,445	2,694,019
특 별 회 계	7,442,709	7,356,409	86,300
상 수 도	5,310,284	5,237,634	72,650
주 택 사 업	720,001	720,001	0
의 료 보 호 기 금	644,314	644,314	0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580,329	566,679	13,65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55,395	55,395	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1,866	41,866	0
주 차 장 설 치 및 관 리	90,520	90,520	0
	0	0	0
	0	0	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경제성결별>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예산액	구성 비율 (%)				예산액	구성 비율 (%)		예산액
세	계	95,047,173	100%	92,266,854	100%	2,780,319	87,604,464	100%	84,910,445	100%	2,694,019	7,442,709	100%	7,356,409	100%	86,300
	지방세	9,378,672	10%	8,949,672	10%	429,000	9,378,672	11%	8,949,672	11%	429,000	0	0%	0	0%	0
	세외수입	23,052,909	24%	21,937,163	24%	1,115,746	17,539,012	20%	16,509,566	19%	1,029,446	5,513,897	74%	5,427,597	74%	86,300
	경상적세외수입	8,722,382	9%	8,026,725	9%	695,657	7,483,343	9%	6,813,343	8%	670,000	1,239,039	17%	1,213,382	16%	25,657
	임시적세외수입	14,330,527	15%	13,910,438	15%	420,089	10,055,669	11%	9,696,223	11%	359,446	4,274,858	57%	4,214,215	57%	60,643
	지방교부세	29,523,000	31%	29,523,000	32%	0	29,523,000	34%	29,523,000	35%	0	0	0%	0	0%	0
	지방양여금	8,506,514	9%	8,506,514	9%	0	8,506,514	10%	8,506,514	10%	0	0	0%	0	0%	0
	보조금	22,686,078	24%	22,350,505	24%	335,573	21,757,266	25%	21,421,693	25%	335,573	928,812	12%	928,812	13%	0
	국고보조금	11,435,203	12%	11,197,408	12%	237,795	10,939,040	12%	10,701,245	13%	237,795	496,163	7%	496,163	7%	0
	도비보조금	11,250,875	12%	11,153,097	12%	97,778	10,818,226	12%	10,720,448	13%	97,778	432,649	6%	432,649	6%	0
지방채	1,900,000	2%	1,000,000	1%	900,000	900,000	1%	0	0%	900,000	1,000,000	13%	1,000,000	14%	0	
세	계	95,047,173	100%	92,266,854	100%	2,780,319	87,604,464	100%	84,910,445	100%	2,694,019	7,442,709	100%	7,356,409	100%	86,300
	인건비	11,438,404	12%	11,394,048	12%	44,356	11,424,056	13%	11,379,700	13%	44,356	14,348	0%	14,348	0%	0
	물건비	10,446,697	11%	10,313,700	11%	132,997	9,577,727	11%	9,452,180	11%	125,547	868,970	12%	861,520	12%	7,450
	이전경비	6,763,357	7%	6,579,061	7%	184,296	6,023,528	7%	5,839,232	7%	184,296	739,829	10%	739,829	10%	0
	자본지출	61,921,151	65%	59,338,857	64%	2,582,294	57,060,855	65%	54,542,761	64%	2,518,094	4,860,296	65%	4,796,096	65%	64,200
	용자및출자	584,703	1%	571,053	1%	13,650	0	0%	0	0%	0	584,703	8%	571,053	8%	13,650
	보전제원	833,455	1%	833,455	1%	0	527,051	1%	527,051	1%	0	306,404	4%	306,404	4%	0
	내부거래	2,024,195	2%	2,024,195	2%	0	2,024,195	2%	2,024,195	2%	0	0	0%	0	0%	0
합	예비비및기타	1,035,211	1%	1,212,485	1%	-177,274	967,052	1%	1,145,326	1%	-178,274	68,159	1%	67,159	1%	1,00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서서항별 >

(단위: 천원)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 △ 감
계	95,047,173	100%	92,266,854	100%	2,780,319	87,604,464	100%	84,910,445	100%	2,694,019	7,442,709	100%	7,356,409	100%	86,300
경 상 예 산	23,849,552	25%	23,430,428	25%	419,124	23,547,848	27%	23,136,174	27%	411,674	301,704	4%	294,254	4%	7,450
인 건 비	11,379,230	12%	11,334,874	12%	44,356	11,364,882	13%	11,320,526	13%	44,356	14,348	0%	14,348	0%	0
기 준 경 비	5,071,488	5%	5,090,180	6%	-18,692	5,071,488	6%	5,090,180	6%	-18,692	0	0%	0	0%	0
관 서 율 열 비	514,539	1%	514,539	1%	0	514,539	1%	514,539	1%	0	0	0%	0	0%	0
경 상 직 경 비	6,884,295	7%	6,490,835	7%	393,460	6,596,939	8%	6,210,929	7%	386,010	287,356	4%	279,906	4%	7,450
사 업 예 산	68,349,762	72%	65,811,293	71%	2,538,469	62,323,149	71%	59,862,530	71%	2,460,619	6,026,613	81%	5,948,763	81%	77,850
국고보조사업(경상)	2,797,976	3%	2,769,471	3%	28,505	2,184,622	2%	2,156,117	3%	28,505	613,354	8%	613,354	8%	0
국고보조사업(사업)	17,503,450	18%	16,904,942	18%	598,508	17,496,600	20%	16,898,092	20%	598,508	6,850	0%	6,850	0%	0
지방양여금사업	8,240,258	9%	8,250,258	9%	-10,000	8,240,258	9%	8,250,258	10%	-10,000	0	0%	0	0%	0
시·도비보조사업	14,167,971	15%	13,235,679	14%	932,292	14,163,171	16%	13,230,879	16%	932,292	4,800	0%	4,800	0%	0
자재(신규)사업	25,084,107	26%	24,094,943	26%	989,164	19,682,498	22%	18,771,184	22%	911,314	5,401,609	73%	5,323,759	72%	77,850
자재(계속)사업	556,000	1%	556,000	1%	0	556,000	1%	556,000	1%	0	0	0%	0	0%	0
세 무 상 환	1,812,648	2%	1,812,648	2%	0	766,415	1%	766,415	1%	0	1,046,233	14%	1,046,233	14%	0
지방채(국내)상환	1,812,648	2%	1,812,648	2%	0	766,415	1%	766,415	1%	0	1,046,233	14%	1,046,233	14%	0
제주부담행위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차관(해외)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등	1,035,211	1%	1,212,485	1%	-177,274	967,052	1%	1,145,326	1%	-178,274	68,159	1%	67,159	1%	1,000
예 비 비	935,251	1%	1,134,251	1%	-199,000	878,786	1%	1,078,786	1%	-200,000	56,465	1%	55,465	1%	1,000
기 타	99,960	0%	78,234	0%	21,726	88,266	0%	66,540	0%	21,726	11,694	0%	11,694	0%	0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안 번호	P1
----------	----

제출년월일 : 1996.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주민공개는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안 제2조)

나.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공개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 공개 (안 제3조 제1항)

다.공개방법은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 (안 제4조 제1항)

평창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의 재정운영상황(이하"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의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의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기타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쉼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공개등)

제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

제출년월일 : 1996.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종합운동장 및 장평오수처리장 관리 기능인력의 정원승인에 따른
군 본청 및 읍·면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관광문화과에 종합운동장 관리 기능인력(지방기능직8등급
(전기원)) 1인 순수 증원(안제2조 제1호)
- 나. 용평면에 장평오수처리장 관리 기능인력(지방기능직8등급
(기계원)) 1인 순수 증원(안제2조 제5호)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31"를 "232"로 하고, 제5호중 "236"을 "23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31</u> 인 2. 의회사무과 : 11 인 3. 직속기관 : 96 인 4. 사업소 : 8 인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36</u> 인 	<p>제2조 _____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32</u> 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37</u> 인

“살맛나는 강원건설”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2228 / 전송 담당 최명규

문서번호 자치 12200-1011
 시행일자 1996. 7. 31 (영구)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결	근수	김영우	지시	충원 인력 선발에 신중 기함함.	
접	일자 시간	1996. 8. 02	결	부근수	2012
수	번호	8419	재공	과장 김명남	
처리과	내무		공람	계공	김영우
담당자	김영우				

제목 시설관리인력 승인

1. 평창군 내무12200 - 256('96.2.10)호 및 양구군 내무12230 - 297('96.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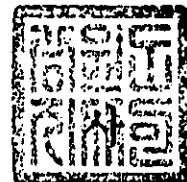
관련임.

2. 위호로 승인 신청한 시설관리 인력을 별첨과 같이 승인하니 조례·규칙

개정·공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 1. 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㉔(11. 15)

定 員 承 認 書

기 관 별	직 명	직 급	승인인원	비 고
평 창 군 (본 청)	지방기능직 (전기)	8등급	1명	평창종합운동장
	지방기능직 (기계)	8등급	1명	장평오수처리장
합 계			2명	
※ 정원시행일 : '96. 7. 27. - 이 하 여 백 -				